

동행·매력  
특별시서울

제334회 시의회 임시회  
교 통 위 원 회

SE♥UL M!SOUL

# 주요 업무보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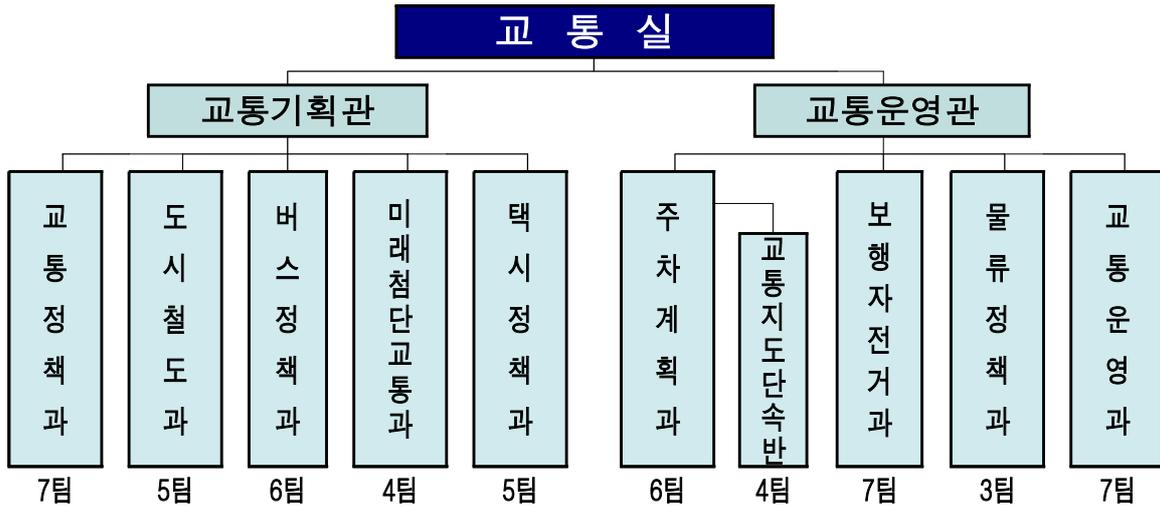
2026. 2.

교 통 실

# I. 기본 현황

## 조직현황

1실 2관 9과 1반



## 인력현황

총 315명 (1급 1, 3급 1, 4급 10, 5급 66, 6급 이하 237) ('26. 1월말 기준)

## 주요기능

부서명	주요업무
교통정책과	교통정책 총괄, 기후동행카드 운영, 도시철도망 및 광역철도계획 수립, 수도권통합요금 정산 등
도시철도과	서울교통공사 지도감독, 민자철도노선 운영 지도감독,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 확보 등
버스정책과	준공영제 개선, 표준운송원가 산정, 버스 노선관리, 버스 재정지원, 공영차고지 관리 등
미래첨단교통과	자율주행-C-ITS실증사업, TOPIS 운영, UAM, 교통정보 서비스 제공 및 홍보 등
택시정책과	택시정책 수립, 택시 면허 관리, 장애인콜택시 운영, 자동차 대여 및 관리 등
주차계획과 (교통지도단속반)	주차계획 수립·조정, 주차수요관리, 공영주차장 관리, 버스터미널 관리, 불법 주정차 및 사업용 차량 단속 등
보행자전거과	보행환경 개선, 공공자전거 운영 및 자전거 이용환경 개선,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 등
물류정책과	물류종합계획 수립,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,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관리 등
교통운영과	교통안전(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), 교통소통 개선, 교통안전시설 관리 등

# II. 교통 비전

## 비전체계



# Ⅲ. 주요 업무보고

## 1. 시민과 동행하는 교통서비스 제공

- ① 친환경 교통혁신, 기후동행카드 전국 확산
- ② 서울을 촘촘히 엮는 도시철도망 구축
- ③ 장애인콜택시 및 동행 온다콜택시 운영 강화
- ④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추진

## 2. 대중교통 이용환경 개선 및 시민안전 강화

- ①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철 이용 환경 조성
- ② 민자철도 등 안정적인 운영 관리
- ③ 시내버스 안전관리 강화
- ④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 및 재정지원 합리화 추진

## 3. 스마트하고 매력적인 미래교통 선도

- 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기반 조성
- ② 서울동행맵 고도화
- ③ 버스정보시스템(BIS/BMS) 고도화
- ④ 도심 유휴공간 활용 생활물류 기반시설 조성

## 4. 보행과 이동이 안전한 교통환경 개선

- ① 개인형 이동장치(PM) 안전관리 강화
- ② 어린이·노인·장애인 보호구역 보행안전 강화
- ③ 고령운전자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실증특례 시범사업 추진
- ④ '26년 자치구 공동주차장 확충사업 추진

# 1. 시민과 동행하는 교통서비스 제공

1-1 친환경 교통혁신, 기후동행카드 전국 확산

1-2 서울을 촘촘히 엮는 도시철도망 구축

1-3 장애인콜택시 및 동행 온다콜택시 운영 강화

1-4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추진

## 1-1

# 친환경 교통혁신, 기후동행카드 전국 확산

기후동행카드 무제한 개념과 내용을 반영한 정부 '모두의 카드' 출시로 서울 선도 혁신 정책의 전국 확산 및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통합 관리 추진

### 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(시범사업) '24.1.27 ~ 6.30 (본사업) '24.7.1 ~
- 이용대상 : 서울 지하철, 시내·마을버스, 따릉이, 한강버스 등
  - ※ 이용범위 : 서울, 김포, 고양, 과천, 남양주, 구리, 성남, 하남 등 8개 지역
- 권종 및 가격 : 30일권, 단기권(1·2·3·5·7일권) 등 7종 운영

구분	일반	청소년·청년·2자녀	3자녀 이상·저소득
대중교통 전용	62,000원	55,000원	45,000원

※ 따릉이 추가 3천원 / 한강버스 추가 5천원 / 따릉이+한강버스 추가 8천원

### ■ 기후동행카드 도입 2년, 운영 성과

- ✓ 일평균 이용자 : 72만명 ('25.12.)
- ✓ 월평균 교통비 3만원 절약
- ✓ 대중교통 이용건수 4% 증가
- ✓ 연간 약 3만톤의 온실가스 저감

▶ 서울 선도 혁신 정책 '기후동행카드', 정부 교통 복지 모델로 전국 확산

### □ 대외 여건 변화

- '기후동행카드'의 무제한 정기권 개념·가격을 포함한 정부 '모두의 카드' 시행
  - 개념 : (기존) K패스 정률제 환급 + (확대) 일정 가격 이상 무제한 환급
- 모두의 카드 도입으로 국비 1,300억원 증액 확보 ※ '25년 국비 547억원
  -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총 예산 : 약 4,775억원 (국비 1,847, 시비 2,928)

### □ 향후계획

- 정부 모두의 카드 도입에 따른 기후동행카드 영향 분석(수요·재정 등)
- 이용자 특성, 이용 수단 등을 고려한 '대중교통비 지원사업 통합 관리체계 구축'으로 사각지대 해소 대책 추진

## 1-2

# 서울을 촘촘히 엮는 도시철도망 구축

교통 소외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하고 계획의 실행력을 강화하는 도시철도망 구축 추진

### 1 제3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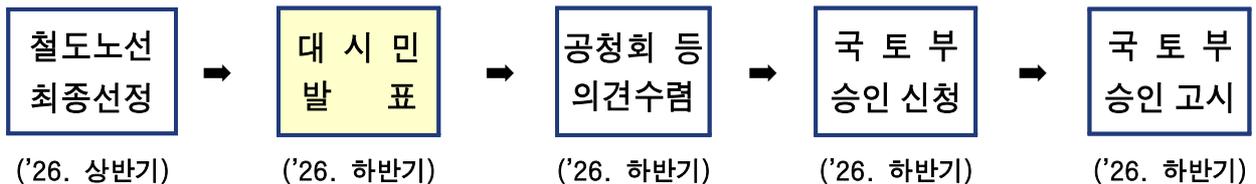
#### □ 추진방향

- ‘직(職)-주(住)-락(樂)’ 연결로 시민 이동성 증진 및 교통 소외지역 균형발전 지원
- 기존노선 실행력 강화, 예타제도 개선 추진으로 신뢰를 지키는 철도계획



< (참고)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>

#### □ 향후일정(안)



### 2 도시철도 계획노선 추진현황

#### □ (8개 노선) 공사중 4개, 기본계획중 1개, 협상중 1개, 예타중 2개

- (공 사 중) 위례선 트램 (’26년 개통목표, 現공정을 92.3%), 동북선 (’27년, 92.7%)  
9호선 4단계 (’28년, 34.7%), 우이신설연장선 (’32년)
- (기본계획) 면목선 (’33년 개통목표, ’26.下 기본계획 승인)
- (협 상 중) 서부선 (’34년 개통목표, 건설출자자 모집 중)
- (예 타 중) 위례신사선 (’35년 개통목표, ’26.3월 예타 발표 예정)  
난곡선 (’36년 개통목표, ’26.1월 예타 착수)

## 1-3

# 장애인콜택시 및 동행 온다콜택시 운영 강화

장애인콜택시 및 동행 온다콜택시 사업 운영을 강화하여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 도모

## (1) 장애인 콜택시 운영 강화

### □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

- 운영규모 : 장애인콜택시 총 818대, 바우처택시 8,600대
- 장애인콜택시 증차, 배차 효율화로 대기시간 지속 감소 추진
  - ※ 대기시간 : ('23년) 47.0분 → ('24년) 40.8분 → ('25년) **33.8분**
  - 특장차량(법인장콜) 36대 증차로 장애인콜택시 총 818대 운영 중
  - 민간협업을 통해 비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바우처 택시 8,600대 확보

### □ 향후계획

- 장애인콜택시(법인장콜) **36대 증차**로 교통약자 이동권 향상 : '26년 상반기
  - 공단장콜 대비 운영 효율이 높은 법인장콜 24대 증차 추진
  - 12대는 장애인·비장애인 모두 탑승 가능한 UD택시 시범 도입
    - ▶ 보편적 디자인의 휠체어 탑승 가능 택시를 도입하여 교통수단의 포용성 증대
- 단시간 운전원 채용 확대('25년 150명→'26년 175명)로 **운행률 제고** : '26. 4.~
  - 평일 출·퇴근 시간대 집중 배치하여 대기시간 단축 도모

## (2) 동행 온다콜택시 운영 활성화

### □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

- 사업내용 : 동행 온다콜택시 콜센터에 전화로 요청하면 상담원이 배차 시스템을 통해 주변 택시기사에게 배차 ※ 이용요금 : 무료
- 이용실적 : 총 25,848건 ('26.1월 일평균 148건) ※ 전문상담원 운영으로 배차효율성 증대
- 시 보유매체, 노인복지관, 택시 내부 등에 동행 온다콜택시 홍보

### □ 향후계획

- 시 홍보매체 활용 및 어르신 이용시설 중심 홍보 강화 : '26. 2.~
- 이용 실적 등을 모니터링하여 운영시간 확대 검토 : '26. 연중

## 1-4

#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추진

시내버스 파업으로 인해 시민들의 이동권이 지속적으로 위협받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해결책 모색을 위해 시내버스의 필수공익사업 지정 추진

### □ 현황 및 문제점

- (현황) 「노동조합법」 제42조의2(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 행위의 제한) 및 동법 제71조(공익사업범위)에 의거 필수공익사업 대상과 필수유지업무에 **항공, 도시철도 등은 포함되어 있으나 '시내버스'는 제외**

※ 2001년까지 필수공익 사업으로 지정되었으나, 일몰에 의해 해제됨

- (문제점) 교섭대표노조 교섭으로 파업시, 전체 사업장·전체 노선의 운행이 일시에 중단되어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현저한 피해 발생
  - '24년 1회(서울 0.5일), '25년 4회(부산 0.5일, 울산 1일, 창원 6일, 광주 13일) 등 파업의 횟수 및 기간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

### □ 추진실적

- 신동욱 국회의원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 개정안 발의('26.1월)

현행	개정안
제71조(공익사업의 범위 등) ① (생략) ② (생략) 1. <u>철도사업, 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업</u>  2~5 (생략)	제71조(공익사업의 범위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1. ----- 및 <u>정기노선 여객 운수사업</u> 2~5 (현행과 같음)

- 지자체(8개) 의견수렴 회의('26.1.29.) 및 국회 정책토론회 추진('26.2.5.)
- 「노동조합법」 개정 건의(고용노동부, 총 6회<sup>'24년~</sup>) 및 국토부 협조요청('26.1.30.)

### □ 향후계획

- 전국 특별시 광역시 공동 법률 개정 건의 등 법제화 지속 추진
- 고용노동부, 국회 환노위 및 경사노위 등 관계기관 제도개선 요청

## 2. 대중교통 이용환경 개선 및 시민안전 강화

2-1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철 이용 환경 조성

2-2 민자철도 등 안정적인 운영 관리

2-3 시내버스 안전관리 강화

2-4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 및 재정지원 합리화 추진

## 2-1

#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철 이용환경 조성

- ◆ 안전 확보 및 편의 증진 등 지하철을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
- ◆ 노후시설·전동차 개선, 동행쉼터 조성 및 혼잡 여성화장실 개선 등 추진

### □ 추진방향

- 노후시설·전동차 교체 및 열차·역사 혼잡관리 등 시민안전 확보
- 동행쉼터 조성, 여성화장실 혼잡 및 역사 안내체계 개선 등 시민 이용편의 증진

### □ 추진계획

- [노후시설] 1~8호선 5개 분야 28개 개선 사업 추진('26.1.~)
- [전동차 교체] 1~8호선 도입 후 25년 이상 경과 노후 전동차 교체
  - (사업물량: 1,526칸) 납품 460칸, 검사 10칸, 제작 298칸, 설계 390칸, 발주공고 368칸<sup>(10차)</sup>
- [혼잡관리] 열차 및 역사 혼잡도 개선 등 지하철 혼잡관리 적극 추진
  - 열차 증회·증차 및 역사 구조개선, 동선분리, 안전인력 배치 등
- [동행쉼터] 37개소 조성 완료, 5개소 추가 설치 추진(~'27.12.)
- [여성화장실] 혼잡 시간대 대기줄 5m 초과 여성 화장실 개선(6개 역사)
  - 인근 시설물 이전·축소를 통한 화장실 확장<sup>(단기)</sup> 및 화장실 신설<sup>(장기)</sup> 등
- [10분내 환승] 내부 환승통로·E/L 설치를 통해 환승시간 단축 추진(13개 역사)
- [안내체계 개선] 환승 이용자의 원활한 길찾기를 위해 안내표지판 정비(29개 역사)

### □ 주요 추진일정

- 환승역 안내표지판(보조·출구안내) 정비 완료 : ~ '26. 3.
- 여성화장실 개선(3개소<sup>단기</sup>) 및 10분 내 환승 사업 타당성 용역 추진 : ~ '26. 12.
- 노후전동차 교체 사업 공정관리(1·5·8호선) 및 계약(6·7호선) : '26. ~ '27.

## 2-2

# 민자철도 등 안정적인 운영 관리

- ◆ 민자철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및 경전철 이용 편의 제고
- ◆ 국내1호 트램 위례선의 안전하고 원활한 개통을 위한 체계적 준비

### □ 민자철도 등 운영개요

구분	9호선	우이신설선	신림선
운영구간	개화~중앙보훈병원(38개역)/40.6km	북한산우이~신설동(13개역)/11.4km	셋강~관악산(11개역)/7.8km
개통일	(1단계) '09.7.24. → (2단계) '15.3.28. → (3단계) '18.12.1.	'17.9.2.	'22.5.28.
사업방식	(1단계) MRG → BTO-mcc('13.) (2·3단계) 민간위탁 → 공공위탁('23.)	BTO → BTO-mcc('25.)	BTO
운영기관	(1단계) 서울시메트로9호선(주) (2·3단계) 서울교통공사(9호선운영부문)	(시행) 우이신설경전철(주)(~'25.3.) → 우이신설도시철도(주)('25.3.~) (운영) 우이신설경전철운영(주)	(시행) 남서울경전철(주) (운영) 로템에스알에스(주)
수송인원('25)	761천명/일	76천명/일	83천명/일

### □ 추진현황

#### ① 민자철도의 안정적 운영 및 경전철 이용 편의 제고

- [9호선 운영]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1~4단계 일원화 방안 검토
  - (문제점) 1노선 2운영사 구조에 따른 기능·예산 중복, 관리 책임 분산 문제 등 발생
  - (방안검토) '28년 2·3단계 위탁 종료 및 4단계 개통 대비, 9호선 통합운영방안 연구용역 추진(서울연구원, '25.11.~'26.4.)
- [우이신설선] BTO-mcc(최소비용보전) 방식 전환 및 운영 안정성 제고
  -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철도시설물 대체투자비, 관리운영비 승인·관리
  - 출퇴근 혼잡시간 안전인력 배치를 통해 역사 내 안전 및 이용 승객 안전 확보



## 2-3 시내버스 안전관리 강화

버스 사고 등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, 시내버스 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안전관리실태를 지속 점검

### □ 추진방향

- (평가매뉴얼) 고위험 운수종사자 관리 및 차량 안전관리 기준 강화
- (안전점검) 차량 및 운전자 점검 기준 강화 및 심층 점검 추진

### □ 추진계획

- 시내버스 평가시 **고령운전자 관리**(<sup>'26</sup>) 및 **차량 점검·정비**(<sup>'27</sup>) 항목 신설 추진
  - 건강상태(혈압, 약물, 당뇨 등) 3건 이상 부적격자 채용시 1명당 2점 감점(최대 10점)
  - 고령운전자 장거리 노선 배치 시 1건당 2점 감점(최대 10점)
  - 제동장치·조향계통 등 점검항목 추가하고, 주1회 점검 여부를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 마련 검토
- 시내·마을버스 차량 및 운전자 **안전관리 점검기준 강화** (<sup>'26.1월~</sup>)
  - (신설) 제동장치, 차량 정기점검 여부 확인 등 차량 관리 상태 점검
  - (강화) 안전인식 교육 및 음주운전 관리실태 등 운전자 안전관리 점검 강화
- 시내·마을버스 안전관리실태 **심층 점검 추진** (<sup>'26.3월 1차점검 후 수시추진</sup>)
  -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전문가 입회, 전기차 안전관리 등 필수항목 심층점검
    - ※ '26.1월 전수점검(서류) 및 표본점검(현장) 결과 미비점 보완 완료 후 추가 심층점검 추진

### □ 향후일정

- 시내·마을버스 안전관리실태 심층점검 : '26. 3월~
- '26년 시내버스 평가 매뉴얼(고령운전자 관리 반영) 배포 : '26. 3월
- '27년 시내버스 평가 매뉴얼(차량 점검·정비 항목 신설) 검토 : ~'26.12월

## 2-4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 및 재정지원 합리화 추진

'26년을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의 원년으로 삼아, 개선된 운행계통 실시 및 변경된 재정지원 방식 적용 등 마을버스 운영 및 제도를 개선

### □ 추진방향

**운행 관리** 마을버스 운전기사 실명 기반 **운행데이터 관리 기반 마련**

**서비스 개선** **운행횟수 증대**, **운행실적 기반 재정지원으로 지원방식 합리화**

**회계 투명성** **회계감사 내실화**, **정산용역 및 정산지침 수립으로 정산체계 마련**

▶▶▶ '25.12월, 서비스 개선·재정지원 합리화 관련 「마을버스 운송서비스 개선을 위한 서울특별시-서울시마을버스 운송사업조합 공동합의문」 체결

### □ 추진계획

- (**운행 DB**) 업체 운행정보 관리와 연계한 재정지원금 지원으로 체계 확립
  - 운전기사 ID 부여 → 운행 확인 및 운행데이터 확보
- (**운송서비스**) **운행횟수·운행대수 증가로 마을버스 이용서비스 개선**
  - '25년 대비 '26년 1월까지 140개 전체업체 기준 3.4% 증회 운영
  - 교통기여도, 운행횟수 증대, 대당기사수 등 서비스 개선 평가(40억원)
- (**지원방식 변경**) **미운행 차량 지원 제외, 운행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**
  - 재정지원기준액을 운행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
  - 지원한도액 상향('25년 25만원 → '26년 30만원)으로 적자업체 지원 강화
- (**회계투명성**) **회사별 회계법인 지정, 정산기준 지침 수립 및 업체 교육**
  - 공통 회계감사 지침 제공, 정산용역 실시로 보조금 집행 적정성 확인
  - 정산지침 수립 - 업체 교육·컨설팅 - 전수점검 - 환수로 투명한 체계 확립

▶▶▶ '26.3월 까지 개선사항 모니터링 후 4월부터 개선 제도 전면 적용

□ **향후일정 : 재정지원금 지원, 정산용역 실시(2월~), 인센티브 지급(4월)**

### 3. 스마트하고 매력적인 미래교통 선도

3-1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기반 조성

3-2 서울동행맵 고도화

3-3 버스정보시스템(BIS/BMS) 고도화

3-4 도심 유희공간 활용 생활물류 기반시설 조성

### 3-1

##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기반 조성

레벨4 무인 로보택시 본격 도입, 새벽 자율주행버스 확대 등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상용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

### □ 사업개요

- (사업목적) 자율주행 기술 발전 촉진 및 시민 교통수단 조기 정착
- (운영현황) 전국 최대 규모 22대 운행 중(버스 15대) ※ 누적 35대 / 누적 탑승객 17.3만명 돌파('26.1월 말 기준)

### □ 추진계획('26년)

- 새벽동행 자율주행 급행버스 운행 확대 ⇨ 기존 대중교통 보완

- (노선) 1개 노선 ⇨ 4개 노선

**동서남북 새벽버스 연결망 구축**

- (방식) 기존 첫차보다 30분 빠른 03:30 출발 / 주요 정류소 정차 **급행 운행**

**기존** 도봉~영등포(A160)

**확대** 은평~양재(A741) / 상계~고속터미널(A148)

/ 금천~세종로(A504)

⇨ 새벽 이동이 많은 동북 / 서북 / 서남부에서 강남 / 도심 / 여의도 연결



- 레벨4 무인 로보택시 본격 실증 ⇨ **기술 선도**

- (지역) 상암 일원(6.6km<sup>2</sup>) / (대수) 3대

- (방식) “**운전자 탑승과 개입 없이**” 무인 자율주행

※ 단, 초기 조수석 탑승



### □ 추진일정

- 새벽동행 자율주행 급행버스 3개 노선 순차적 개통 : '26. 3월~
- 레벨 4 로보택시 승객 탑승 정식 운행 : '26. 10월

## 3-2

# 서울동행맵 고도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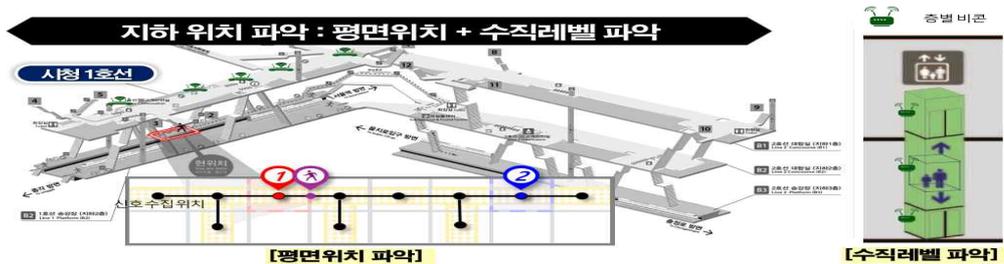
교통약자 이동지원 통합플랫폼으로써 서비스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용 대상과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는 고도화 추진

### □ 추진전략

- (대상별) **시각장애인** 등 기존 지원이 미흡했던 교통약자 대상 특화기능 개발
- (수단별) 대중교통 이용 **수단(버스, 지하철)별 맞춤형** 서비스 설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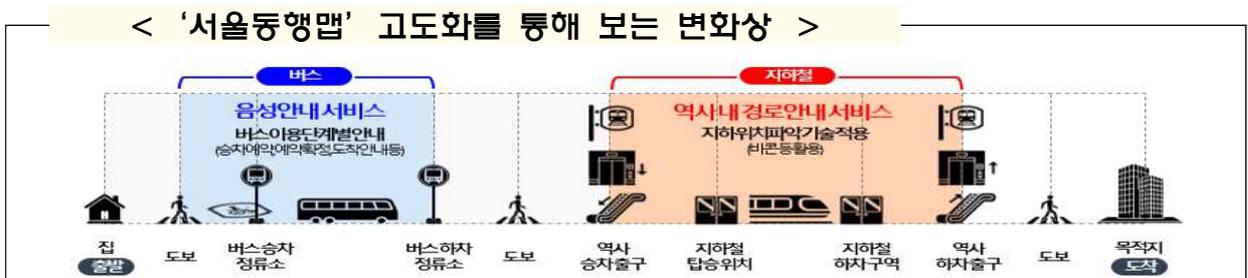
### □ 추진계획

- ① AI 기반 음성 안내 제공을 통해 시각장애인 등 **이용 대상 확대**
- ② 역사 내 위치 파악 기술 적용으로 지하까지 **서비스 범위 확장**
  - 실내 데이터 맵 구축을 통해 현 위치 파악과 이동 경로 내비게이션 서비스 제공



- ③ 버스 교통 정보 실시간 제공으로 **시민 서비스 품질 향상**

- (기존) 저상버스 단순 예약, (개선) 예약확인, 버스도착·탑승·하차 안내 등 맞춤형 알림



### □ 추진일정

- (1단계) 교통약자 지원 AI 기반 음성 안내 서비스 : '26. 3분기
- (2단계) 지하철 서비스 개발 / 보행 경로 내비게이션 구축 : '26. 4분기

### 3-3

## 버스정보시스템(BIS/BMS) 고도화

버스 위치정보를 초정밀 수집·가공하여 도착 정보 정확도를 높이고, 신속한 돌발·우회 정보 제공으로 시민 체감형 교통서비스 강화

### □ 추진배경

- 버스 내부 통합단말기 전면 교체 및 버스 위치정보 시스템 개선
  - 버스정보시스템(BIS) 고도화로 버스정보 정확도 제고 (실시간 위치 제공 20초→1초)

### □ 추진계획

- ① [정확한 도착 안내] 시내버스 정류소 도착 시간 및 순서 정확도 향상 '26.上  
→ (기존) 도착시간 정확도 90%, (개선) 도착시간 정확도 향상(95%), 도착순서 제공
- ② [실시간 우회 안내] 버스 돌발·우회 시 BIT 등 실시간 정보 제공 '26.下  
→ (기존) 단순 정류소 무정차(우회) 안내, (개선) 변경된 버스 우회 경로 및 버스위치 제공



+



- ③ [운수사 지원] 버스운행관리시스템(BMS) 전면 개편으로 운행관리 지원 '26.下  
→ (기존) 단순 버스위치 파악, (개선) 버스 배차, 운전자관리, 우회경로 생성기능 추가 등
- ④ [탄소배출 모니터링] 시내버스 탄소 배출량 산정·관리 기능 구축 '26.下  
→ (기존) 별도 관리체계 부재, (개선) 노선·차량별 배출량 산정(보고 체계 구축)
- ⑤ [교통약자 안내] 저상버스 예약 시, 버스 내부 교통약자 탑승 안내 '26.下  
→ 버스 안내방송 및 LCD패널로 교통약자 탑승 안내 추가

### 3-4

## 도심 유희공간 활용 생활물류 기반시설 조성

도심 유희공간(주차장, 지하철역사 등)에 생활물류 시설을 구축·운영하여 효율적인 대시민 물류 보관·배송 서비스 제공

### □ 추진배경

○ 생활물류는 지속 증가하나, 택배 등 관련 시설의 외곽화로 배송거리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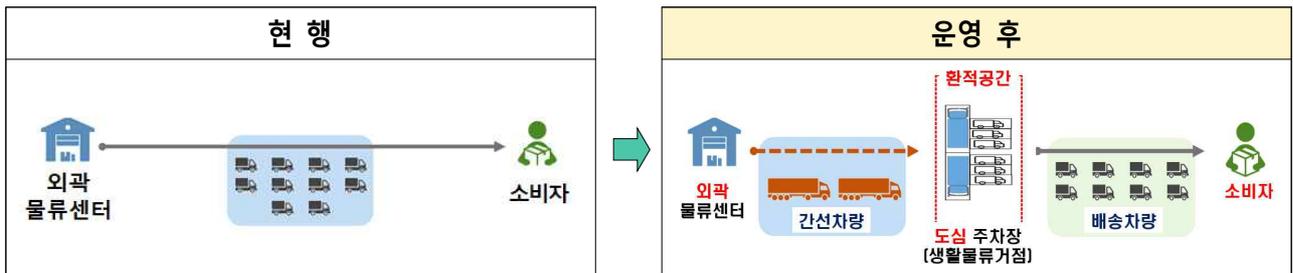
- ▶ 택배 물동량(전국) : 27.9억Box('19) → 59.6억Box('24) (2.1배 ↑)
- ▶ 택배차 평균 운행거리 : 47.5km/일-대('19) → 64.5km/일-대('23) (35.8% ↑)

○ 도심 유희공간에 물류시설을 조성하여 생활물류 보관·배송서비스 제공

### □ 추진계획

○ 도심 내 주차장을 택배 환적(간선차량 → 배송차량) 공간으로 운영

- 환적작업이 가능한 주차장[(예) 주차면수 300면이상] 선정(국토부 규제샌드박스 참여)
- 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없는 심야시간대 주차장 유희공간(20~30면) 활용 운영



○ 서울역(4호선)에 여행객 캐리어 자동보관·배송 서비스 시행

- 캐리어 자동보관장치 개발·설치에 따른 안전기준 준수 확인 및 서비스 개시
- 배송업체 연계하여 '보관함 → 인천·김포공항' 까지 캐리어 배송서비스

### □ 향후일정

- 주차장 유희공간 대상지 선정('26.5.), 운영('26.6.~)
- 여행객 캐리어 자동보관 서비스('26.3.), 배송서비스('26.5.)

## 4. 보행과 이동이 안전한 교통환경 개선

4-1 개인형 이동장치(PM) 안전관리 강화

4-2 어린이·노인·장애인 보호구역 보행안전 강화

4-3 고령운전자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실증특례  
시범사업 추진

4-4 '26년 자치구 공동주차장 확충사업 추진

## 4-1

# 개인형 이동장치(PM) 안전관리 강화

전동킥보드로 대표되는 개인형 이동장치(Personal Mobility)의 탑승자 교통사고 예방 및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

### □ 현 황

- 민간현황 : 4개 대여업체(5개 브랜드), 18,548대 운영 ('25.12월 기준)

구 분	'18년	'19년	'20년	'21년	'22년	'23년	'24년	'25년
업 체 수(개)	1	13	13	15	9	5	3	4
운영대수(대)	150	7,500	42,517	38,373	45,991	41,440	28,385	18,548

### □ 추진실적

- PM 통행금지 도로(킥보드 없는 거리) 시범 운영 ('25. 5월~ )
  - 홍대 레드로드, 반포 학원가 현장 홍보·캠페인·계도 : '25.5.16 ~ 6.12
  - 시민인식조사('25.9월) 결과, 응답자의 98.4%가 통행금지 확대운영에 찬성
-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인식 고취
  - 주정차 위반 PM 견인 강화 및 업체 자체 수거 관리로 무단 방치 신고 감소(30%)

구 분	합계	'21년(7~12월)	'22년	'23년	'24년	'25년
신고건수(건)	573,521	30,225	94,181	141,031	181,278	126,806
견인건수(건)	299,789	21,173	63,328	62,179	88,763	64,346
자체수거(건)	187,536	9,032	30,471	78,660	50,729	18,644

※ 직접 견인제도로 전년 동기 대비 강남구 135%, 은평구 58% 견인 건수 증가

- PM 안전교육 이수 90,624명, 시·경찰합동 단속·계도 31회
- PM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여업체 안전자구책 마련 추진 ('25.12월 기준)
  - 시·대여업체 정기 간담회 개최 4회, 대규모 인파밀집 행사 대비 조치 19회

### □ 향후계획

- (PM 통행금지 도로 확대) 인파밀집지역 등 PM 충돌 위험이 높은 도로에 확대 추진
- (무단방치 PM 견인 강화) 단속 공무원 직접 견인 제도를 전 자치구로 확산 유도
- (PM 기본법 제정) PM 이용안전 및 관리를 위한 관련 법률의 조속한 제정 지속 촉구

## 4-2 어린이·노인·장애인 보호구역 보행안전 강화

보행약자(어린이·노인·장애인) 이용시설의 주변도로 중 일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도로·교통안전시설물 확충으로 보행약자의 보행안전 강화

### □ 사업개요

- 관련근거 : 도로교통법 제12조, 제12조의2
- 지정현황 : 1,882개소 ('25.12월말 기준)
  - 어린이 1,658개소, 노인 195개소, 장애인 29개소
- '26년 사업비 : 37,879백만원
- 추진절차 : 신청(시설장) → 현장조사(자치구) → 경찰협의(市) → 지정(市)



### □ 추진계획

- 보호구역 **실태조사 및 중장기 교통안전 확보 기본계획 수립으로 체계적 관리**
  - 보호구역 내 시설·교통 환경 등 실태조사 및 개선안 마련(매년)
  - 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 목표 및 전략 설정(5개년, '28년~'32년)
- 보도 설치 등 **이면도로 정비**를 통한 안전한 보행공간 48개소 확충
  - 도로 운영체계 변경(양방통행 → 일방통행) 등으로 보도(보행로) 28개소 확충
  - 보도 폭 확보가 어려울 경우, 제한속도 하향 및 보행친화 포장 20개소
- 방호울타리, 안전표지 등 **도로·교통안전시설 489개소 확충**
  - 방호울타리 63개소, 노란신호등 신설·교체 130개소, 횡단보도 정비 216개소
  - 보호구역 내 차량 운전자 주의 및 감속 운전 유도를 위한 무인교통단속장비 80대 확충
- 불법 주·정차 근절 등 보호구역 인식 제고를 위한 **교통안전 문화 조성**
  - 보호구역 주변 불법 주·정차 근절을 위한 시·구 단속반 연중 단속강화
  - 초등학교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사 동행 인솔 및 교통안전수칙 홍보·캠페인

### □ 추진일정

- 보호구역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: '26. 2. ~ 12월
- 보호구역 보행공간 확보 및 안전시설 확충 : '26. 2. ~ 12월
- 보호구역 운영 및 교통안전 문화 조성 : '26. 1. ~ 12월

## 4-3 고령운전자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실증특례 시범사업 추진

「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실증특례 시범사업」을 통해 고령층의 안전 운전 지원 및 사업 효과성 분석

### □ 사업개요

- 대 상 : 서울시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 및 고령 택시운전자
- 규모(차종) : 200대 (승용승합차, 1.4톤 이하 화물차)
- 내 용 :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지원(설치)
- 사 업 비 : 88백만원 (장치비용 440,000원 × 200대)

### □ 추진계획

- (대상자 선정) 고령운전자 대상 공모 시행하여 3월 말 선정
  - 공모기간 : '26. 3. 3. ~ 3. 17.
  - 선정규모 : 일반 고령운전자 80대, 고령 택시운전자 120대(개인 60, 법인 60)
    - ▶ (일반·개인택시) 고령 운전자 순, 차상위 계층 우대
    - ▶ (법인택시) 고령 운수종사자 비율 높은 운수사업자
- (장치 설치) 대상자 선정 후 1개월 이내 설치 ('26.4월까지)
- (시범 운영) 1년간('26.5.~'27.4.) 시범 운영을 통한 효과성 확인
- (효과 분석) 급가속 이력 및 제한속도 준수 등 데이터 분석
  - 서울시·한국교통안전공단 협업으로 추진

### □ 향후계획

- 모집·선정 및 장치 설치 : '26. 3. ~ 4월
- 효과분석 및 설문조사 : '26. 8. / 11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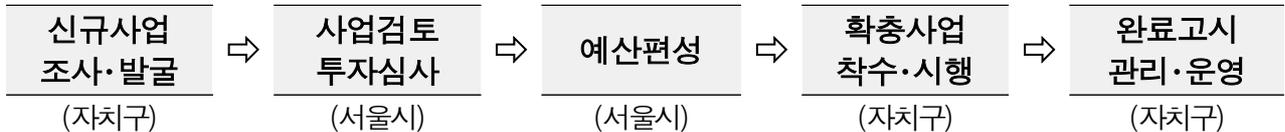
## 4-4

# '26년 자치구 공동주차장 확충사업 추진

주차환경이 열악한 주거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자치구 공동주차장 건설 확충사업을 추진

### □ 사업개요

- 대상사업 : 주차장 확보율이 100% 미만인 주거지역의 주차장 확충 사업
  - 주차장확보율(%) = (반경 300m이내 주차면수 ÷ 자동차등록대수) × 100
- 지원규모 : 자치구별 차등 보조율(30~70%)에 따라 보조금 지원
- 추진절차 : 신규사업 조사·발굴(자치구), 사업선정(서울시)



### □ 추진사업

- 11개 자치구 13개 사업, 13,282백만원

(단위 : 백만원)

연번	자치구	사업명	주차면수	편성예산	비고
계		13개 사업	1,474면	13,282	
1	중구	신당동 주차타워 건립	123면	200	
2	용산구	해방촌 공영주차장 건설	49면	3,549	
3	광진구	긴고랑길 주택가 공동주차장 입체화사업	89면	1,431	
4	동대문	동대문구청 후문앞 도로 지하주차장 건설	86면	500	
5	동대문	간데메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	85면	1,132	
6	성북구	성북동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	139면	500	
7	강북구	우이동 교통광장 공영주차장 건설	266면	2,500	
8	강서구	화곡초 복합화 지하공영주차장 건설	130면	300	
9	금천구	시흥5동 917-5외 7 소규모주차장 건설	24면	300	
10	동작구	상도4동 214-200 소규모주차장 건설	8면	1,256	
11	관악구	대학동 공영주차장 건립사업	117면	1,000	
12	관악구	상도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	132면	565	
13	강동구	동명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	226면	49	

### □ 추진일정

- '26년 사업 시행 및 '27년 신규사업 조사·발굴 : '26. 2. ~

# 법령·제도개선 건의사항

교 통 실

# 법령·제도개선 건의사항 목록

교 통 실

총 1건 건의

목 록

연 번	건의제목	건의부서
1	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건의	버스정책과

# 법령 · 제도개선 건의사항

건의 제목 (건의부서, 건의일자)	건의내용	소관부처																
<p>1.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요청 (버스정책과, '26.1.22.)</p>	<p>□ 현황 및 문제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현 황) 노동조합법 제42조의2(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 행위의 제한) 및 동법 제71조(공익사업범위)의거 필수공익사업 대상과 필수유지업무에 항공, 도시철도 등은 포함되어 있으나 '시내버스'는 제외</li> <li>- 철도와 같은 필수유지업무(필수공익사업)의 경우 쟁의기간 중이라도 최소한의 운영수준을 유지해야하며, 파업참가자의 50%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체가능</li> <li>- 시내버스의 경우 법 제71조(공익사업의 범위 등) 필수공익사업에서 '00년 일몰('06년 삭제)되어 공익사업인바, 쟁의기간 최소 운영수준 유지 및 대체 근로 불가능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【공익사업 등 법체계】</b>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: 10px 0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5%;"></th> <th style="width: 25%;">일반사업</th> <th style="width: 15%;">공익사업</th> <th style="width: 45%;">필수공익사업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조정기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0일</td> <td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5일</td> </tr> <tr> <td>조정신청</td> <td>조정위원회 (공익위원, 근로자위원, 사용자위원)</td> <td></td> <td>특별조정위원회 (공익위원 3인)</td> </tr> <tr> <td>쟁위시 대체근로</td> <td colspan="2">쟁위행위로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해 채용, 대체 및 도급, 하도급을 줄 수 없음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쟁위행위 시 필수 유지업무협정을 통해 업무 유지·운영수준, 필요인원 등 정함</li> <li>· 50% 초과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용, 대체 및 도급, 하도급 가능</li> </ul>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일반사업	공익사업	필수공익사업	조정기간	10일		15일	조정신청	조정위원회 (공익위원, 근로자위원, 사용자위원)		특별조정위원회 (공익위원 3인)	쟁위시 대체근로	쟁위행위로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해 채용, 대체 및 도급, 하도급을 줄 수 없음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쟁위행위 시 필수 유지업무협정을 통해 업무 유지·운영수준, 필요인원 등 정함</li> <li>· 50% 초과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용, 대체 및 도급, 하도급 가능</li> </ul>	
	일반사업	공익사업	필수공익사업															
조정기간	10일		15일															
조정신청	조정위원회 (공익위원, 근로자위원, 사용자위원)		특별조정위원회 (공익위원 3인)															
쟁위시 대체근로	쟁위행위로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해 채용, 대체 및 도급, 하도급을 줄 수 없음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쟁위행위 시 필수 유지업무협정을 통해 업무 유지·운영수준, 필요인원 등 정함</li> <li>· 50% 초과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용, 대체 및 도급, 하도급 가능</li> </ul>															

건의 제목 (건의부서, 건의일자)	건의내용	소관부처								
	<p>○ (문제점)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인 시내버스는 시민 생활과 필수 불가결하고 파업 시 대체 교통수단이 불비함</p> <p>- 지하철, 택시, 따릉이, PM 등은 비용·접근성·안전 문제 등으로 이용에 한계가 있고, 전세버스도 계절별·시간대별로 회사, 학교 등과 계약이 되어있어 차량확보 어려움</p> <p>※ '24.5.13 파업 시 노선버스 운행률은 6.8%에 불과 대중의 일상에 크나큰 불편 초래</p> <p>□ 개선방안</p> <p>○ 정기노선을 운행하는 시내버스도 필수 공익사업으로 지정 건의</p> <p>○ 필수공익사업별 필수유지업무에 시내버스 차량의 운전업무와 차량의 일상적인 점검, 정비 업무 추가 (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)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563 1171 1241 1966"> <thead> <tr> <th data-bbox="563 1171 914 1223">현행</th> <th data-bbox="914 1171 1241 1223">개정안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data-bbox="563 1223 914 1323">제71조(공익사업의 범위 등) ① (생략)</td> <td data-bbox="914 1223 1241 1323">제71조(공익사업의 범위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563 1323 914 1778">② 이 법에서 "필수공익사업"이라 함은 제1항의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.</td> <td data-bbox="914 1323 1241 1778"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563 1778 914 1966">1. 철도사업, 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2~5 (생략)</td> <td data-bbox="914 1778 1241 1966">1. ----- -----<u>및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 (특별시·광역시에 한한다)</u> 2~5 (현행과 같음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현행	개정안	제71조(공익사업의 범위 등) ① (생략)	제71조(공익사업의 범위 등) ① (현행과 같음)	② 이 법에서 "필수공익사업"이라 함은 제1항의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	1. 철도사업, 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2~5 (생략)	1. ----- ----- <u>및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 (특별시·광역시에 한한다)</u> 2~5 (현행과 같음)	
현행	개정안									
제71조(공익사업의 범위 등) ① (생략)	제71조(공익사업의 범위 등) ① (현행과 같음)									
② 이 법에서 "필수공익사업"이라 함은 제1항의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									
1. 철도사업, 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2~5 (생략)	1. ----- ----- <u>및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 (특별시·광역시에 한한다)</u> 2~5 (현행과 같음)									

건의 제목 (건의부서, 건의일자)	건의내용	소관부처				
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〉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50%; text-align: center;">현행</th> <th style="width: 50%; text-align: center;">개정안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vertical-align: top;">           제22조의2(필수유지업무의 범위)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필수공익사업별 필수유지업무는 별표 1과 같다.             [별표 1]            1~10 (생략)             &lt;신설&gt;         </td> <td style="vertical-align: top;">           제22조의2(필수유지업무의 범위)           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[별표 1]            1~10 (현행과 같음)   <u>11.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의 필수유지 업무</u>            가. 시내버스 차량의 운전업무            나.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차량의 일상적인 점검이나 정비 업무        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□ 개선효과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시내버스 파업 시 대중교통 이용권 보장으로 시민 불편 최소화</li> <li>○ 파업 시에도 최소 운행률 준수를 통해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노동쟁의권과 공익의 조화 추진</li> </ul> <p>□ 전문가 의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대중교통 이용객은 일일 8,563천명('22.12.)으로 이중 시내버스는 일일 3,439천명(40.2%)가 이용하고 있어 주요 교통수단 중 하나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시내버스 파업시 출퇴근, 등교, 업무 등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원활한 일상생활이 곤란함</li> <li>- 또한 파업으로 자치구에서 전세버스 등을 활용해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하여도 시내버스의 대체수단으로 역할을 다하기에는 한계</li> </ul> </li> </ul>	현행	개정안	제22조의2(필수유지업무의 범위)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필수공익사업별 필수유지업무는 별표 1과 같다.  [별표 1] 1~10 (생략)  <신설>	제22조의2(필수유지업무의 범위) (현행과 같음)  [별표 1] 1~10 (현행과 같음)  <u>11.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의 필수유지 업무</u> 가. 시내버스 차량의 운전업무 나.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차량의 일상적인 점검이나 정비 업무	
현행	개정안					
제22조의2(필수유지업무의 범위)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필수공익사업별 필수유지업무는 별표 1과 같다.  [별표 1] 1~10 (생략)  <신설>	제22조의2(필수유지업무의 범위) (현행과 같음)  [별표 1] 1~10 (현행과 같음)  <u>11.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의 필수유지 업무</u> 가. 시내버스 차량의 운전업무 나.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차량의 일상적인 점검이나 정비 업무					

건의 제목 (건의부서, 건의일자)	건의내용	소관부처
	<p>○ 시민의 이동권 확보와 원활한 대중교통 운영을 위해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파업을 결의하더라도 최소한의 운행률은 준수할 수 있도록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될 필요성이 있음</p> <p>-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’ 개정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(서울시 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(’24.4.))</p>	